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2015. 1.



차 례

[제1부 공통 사항]

I.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2
2. 추진근거	2
3. 사업의 종류	4
4. 참여주체별 역할	5
5. 추진체계	6
6. 예산운용	6
7. 사업시행 일정	7

II.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1. 사업계획서 제출	8
2. 사업계획서 심사	9
3. 사업계획서 승인	12



Ⅲ.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1. 사업 실시	13
2. 지원금 신청	15
3. 지원금 지급	15
4.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17
5. 사업주의 감원방지 의무	18

Ⅳ.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20
2.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21

Ⅴ. 위탁사업 시범 실시

1. 실시근거	23
2. 위탁 대상사업	23
3. 위탁사업 실시절차	23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I.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1. 사업개요	26
2. 지원대상	26
3. 지원요건	27
4. 지원내용 및 한도	28
5. 사업시행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33

II. 고용환경개선 지원

1. 사업개요	35
2. 지원대상	35
3. 지원요건	35
4. 지원내용 및 한도	37
5. 사업시행 관련사항	38
6.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에 따른 특례	39
7.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40



Ⅲ.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1. 사업개요	41
2. 성장유망업종	41
3. 국내복귀기업	43
4. 지역특화산업	44
5. 사업시행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47

Ⅳ. 전문인력채용 지원

1. 사업개요	48
2. 지원대상	48
3. 지원요건	49
4. 지원내용 및 한도	52
5. 사업시행 관련사항	52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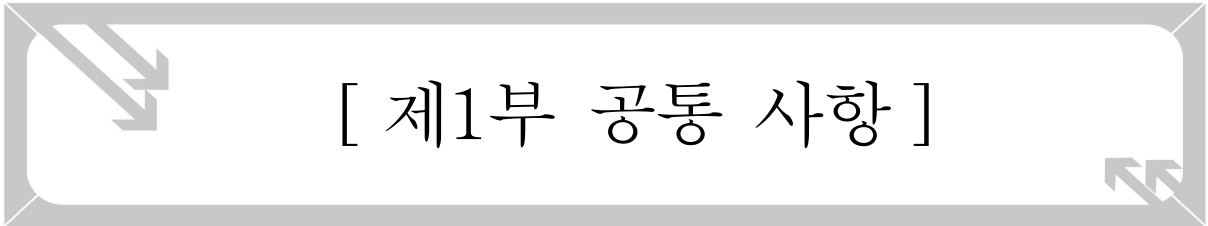
[제3부 관련 서식]

[서식 1]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55
[서식 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56
[서식 3] 고용창출지원사업 검토서	58
[서식 4]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	59

[서식 5]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	60
[서식 6]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61
[서식 7]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	63
[서식 8]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64
[서식 9]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 신청서	65
[서식 10] 고용환경 개선 용자지원 신청서	67
[서식 11] 고용창출지원사업 용자지원 결정 통지서	68
[서식 12]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국내복귀기업) 지원금 신청서	69
[서식 13]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71
[서식 14] 고용창출 지원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신청서	73

[부 록]

[부록] I. 성장유망업종의 지원대상	75
II. 사업계획서(일자리함께하기) 작성 예시	106

A decorative rectangular box with a grey border and rounded corners. Inside the box, on the left side, there is a grey arrow pointing downwards and to the right.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grey arrow pointing upwards and to the right. The text "[제1부 공통 사항]" is centered within the box.

[제1부 공통 사항]



I.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함

1-2. 지침적용 대상사업

이 지침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사업,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1-3. 지침적용 대상기간

이 지침은 2015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1-4. 해석권한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추진근거

2-1.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제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사업의 종류

3-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인건비, 설비투자비 지원 및 용자, 임금감소 보전)을 지급하는 사업

3-2.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를 용자 지원하는 사업

3-3.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성장유망산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3-4.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4. 참여주체별 역할

4-1. 고용노동부 본부

① 사업시행계획 수립

②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가. 전반적인 제도 관리, 지침해석 및 외부기관 대응업무 등을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담당

나.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근로개선정책과에서 담당(노동시장정책과와 협의)

③ 용자사업 수탁기관 선정·지도

④ 사업의 홍보 및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4-2. 지방고용노동관서

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사업주의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규모 결정

③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④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⑤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4-3. 사업주

① 사업계획서 제출

②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수행

③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청구 및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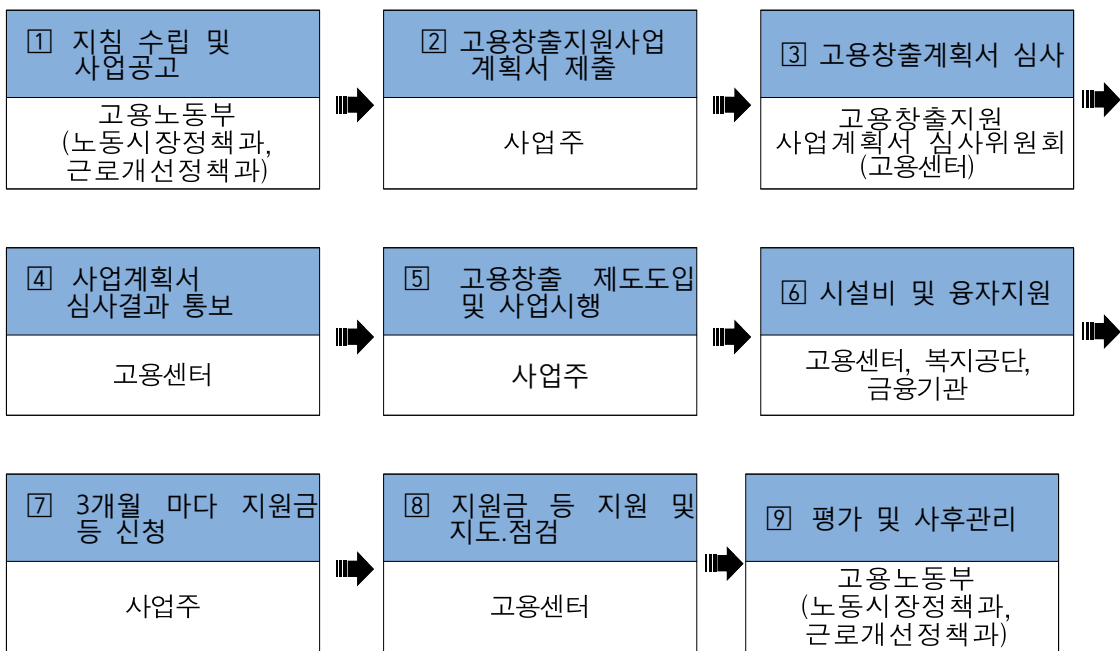


④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4-4. 사업 수탁기관

- ①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및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 관리
- ② 금융기관과의 대하약정 체결 및 금융기관 지도
- ③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진 체계



6. 예산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별 예산 배분 기준

- 가. 최근 3년간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 집행 및 승인현황
- 나. 관내 사업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다. 지역별 특이 소요 등

② 예산 배분 절차

가. 고용노동부(본부)는 '15. 1월 중에 각 지방청별·세부사업별 연간 예산을 배분

< '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환경 개선지원	지역·성장업 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계 538) • 인건비지원 65 • 설비투자지원 40 • 설비투자용자 400 • 임금보전 33	(계 57) • 시설지원 21 (*14년 이전 승인사업장에 대한 지원예산) • 용자지원 36	41	55

나. 각 지방청은 배분받은 예산 범위내에서 소속 지청의 예산을 세부사업별·회차별로 적절히 분배

다. 각 청장(지청장)은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취소율, 근로자 미채용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승인

-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배분
- ❖ 용자사업은 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자금 배정

7. 사업시행 일정

7-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는 연중 수시 접수하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마감은 매월 말로 정하여 시행

* 매월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서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횟수 조정가능

①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기업지원 부서)

② 사업계획서 승인: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Ⅱ.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1. 사업계획서 제출

1-1.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고용센터)에게 회차별 심사 마감일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창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 경우에는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② 사업계획서의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1-2. 구비서류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1-3.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함

①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②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③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심사

2-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하여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각 지방관서에 설치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② 당해 고용센터 소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은 위원에 포함하고 소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
- ③ 고용·노동 및 건축분야(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지원 및 용자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심사하는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 또는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부서(산업정책 부서 포함) 관계자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함
- ④ 지방관서장은 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외부전문가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시 위원 인력풀 중에서 위원을 지명함
- ⑤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후 2주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
- ⑥ 지방관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사업개요, 사업계획의 법령 적합여부 등 ‘고용창출지원사업 검토서’(서식3)를 작성하여야 함
- ⑦ 회의의 개최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심

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특히, 지방관서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토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사업계획서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함

⑧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서면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심사위원이 의견서를 보내온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⑨ 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심사의 특례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공모*에 ‘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합동공모(연 1회)를 통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음

* (심사·선정과정) ①부처 합동공고→②자치단체 사전조율 및 합동 신청→③공동 심사·선정(합동심사위원회 개최)→④합동 결과발표

- 이에 따라 본부에서 합동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소재 관할 센터로 이송하면 관할 센터는 검토 후 ‘합동공모사업 검토서’를 본부에 제출
- 본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한 ‘합동공모사업 검토서’를 합동심사위원회(각부처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에 제출
- 합동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봄(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위원회 개최 불요)

2-2. 심사 방법

- ①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 계획서심사표’(서식4)에 따라 평가함
 - 가.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서식5)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결과를 최종 결정함
 - 나.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대상 사업장 결정은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승인물량을 참여기업에게 나누어 선정하는 것은 지양
- ② (가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은 3년간 지원대상 사업 심사시 우대(심사점수 가점 5점 부여)
- ③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사업장 중 ‘내일희망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우선선정
-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⑤ 심사위원회는 매회차 접수 마감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 승인

3-1. 승인 절차

- ① 지방관서장은 관서별·회차별 예산범위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하되, 심사결과가 법령·지침, 예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②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음

3-2. 승인결과 발표

- ①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사업주에게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서식 6)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승인내용 및 향후 절차 등을 통보함
- ②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가 불승인된 사업주에게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지 아니한 사유를 통보함

Ⅲ.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1. 사업 실시

- 1-1. 사업주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 1-2.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다음 규정에 따른 '제도도입', '고용환경개선' 등을 완료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서식 7)를 제출 하여야 함
 -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에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순환제를 시행하기 위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제도도입을 하여야 함
 - ②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함.
 - ③ 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 완료해야 함
 - ④ 위 ①, ②, ③의 경우 노사간의 협의(합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건축물 인허가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도도입 등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②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1-3. 1-2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는 1-2에 따른 마지막날(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마지막 날(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제도도입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날>

지원금 종류	완료해야할 내용	신고된 것으로 보는 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도도입, 설치비투자 계약	통지서 받은 다음달부터 6개월이 되는 마지막날
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개선비 투자	통지서 받은 다음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마지막날

*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을 제도도입 등이 이루어진 날로 봄

-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주가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1-4. 사업주는 관할 지방관서장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5. 지방관서장은 사업주가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주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 ❖ 인수나 합병한 사업주는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1-6.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예산(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중 설비투자비 지원·용자와 고용환경개선 용자에 한한다)을 증액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서식 8)를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음

- 지방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초 승인된 금액의 30%한도내(투자비 지원·용자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에서 증액할 수 있음

1-7. 근로자 증감 산정 시 근로자 수는 월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하 같음)

1-8.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본 사업 실시와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4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지원금 등의 신청

2-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서식 9),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서식 10),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서식 12 또는 13), 전문인력채용지원금(서식 13)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사업별 필요서류를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2.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3-1. 지방관서장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①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② 이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지

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지원함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 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3-2.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용자와 고용환경개선 설치비용자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에 따른 승인금액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급됨

❖ 용자지원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3.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3-4. 지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4.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제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⑥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 이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는 제외함

가.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다.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⑧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5.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

5-1.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사용)하여야 하며,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5-2. 감원방지기간 적용사업: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채용지원

<별표>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2.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북한이탈주민 ④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⑤신용회복지원자 ⑥결혼이민자 ⑦위기청소년 ⑧여성가장 ⑨건설일용직 ⑩장애인 ⑪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⑫니트(NEET)족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 ①시험고용 프로그램 ②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③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④직업재활 프로그램
4.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수자
5.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이수자
6.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7. 「자활근로」 이수자
8. 「희망리본 프로젝트」 이수자



IV.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1-1. 지방관서장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1-2. 지방관서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이에 대하여 보고거부, 거짓보고, 문서제출거부, 거짓문서제출 또는 출석거부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 사업 수탁기관은 필요시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보고요구 등과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1-3. 지방관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거부, 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 ❖ 사업 수탁기관은 필요시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조사 등과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2.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2-1. 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2-2.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2-3.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용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원금만 반환

2-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 ①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함



②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대한 지급제한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V. 위탁사업 실시

1. 실시 근거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45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 근로복지공단,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2. 위탁 기관 및 대상사업

2-1. 위탁기관: 근로복지공단

2-2. 위탁 대상사업

-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설비투자비 용자지원
- ② 고용환경개선 시설용자지원

3. 위탁사업 실시절차

3-1. 위탁사업 계획수립

- ① 사업 수탁기관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금융기관 대출약정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용자금 반환, 회수 및 취소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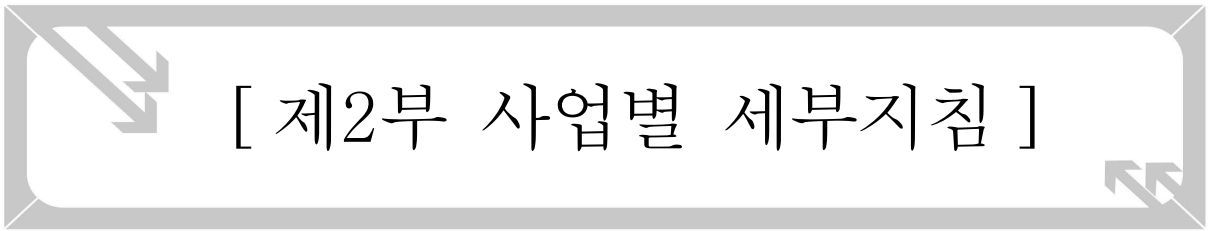
다. 용자실적에 관한 사항

라.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수탁기관의 시범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음

3-22. 위탁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

사업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시 결과 및 분석’, ‘사업예산 정산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A decorative rectangular box with a grey border and rounded corners. It contains the text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in the center. There are two grey arrow icons: one in the top-left corner pointing down and right, and one in the bottom-right corner pointing up and left.

[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



I.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1. 사업개요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기업규모(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91249)

* 지원제외 대상업종 판단시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2-2. 지원금 내용별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①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모든 기업

②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설비투자비 용자: 모든 기업

④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도소매, 음·숙박, 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3. 지원요건

3-1.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함

① **(교대제)**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 주야 2조에서 3조(3조 3교대, 3조 2교대 등)로 개편하거나, 3조(3조 3교대, 3조2교대 등)를 4조(4조 3교대, 4조 2교대 등)로 하는 경우

② **(실근로시간 단축제)** 사업계획서 상의 실근로시간 단축조치 시작한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전체근로자의 주(週)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 전체근로자의 주(週)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 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③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2.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도입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도입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를 초과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한 날

4. 지원내용 및 한도

4-1.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 ①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승인인원)는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는 버림)로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로 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근로자수 산정 및 실근로시간 산정을 하는 경우에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② 지원금 지급시, 증가된 근로자수(도입후 월평균근로자수 - 도입전 월평균근로자수) 1명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함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제조업	대규모 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70만원	2,160만원

가.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단위로 1년간 또는 2년간 지원금 지급

나.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증가근로자수 산정함

다.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③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 전에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 함께하기를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

4-2.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한 경우 설비투자비* 지원

☞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지원대상 제외)

❖ 휴게시설 등 복지시설은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활용 가능

- ② 설비투자비 지원은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제도도입 후 6개월간 증가근로자수(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 1인당 500만원(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 ③ 지원금 신청절차

가. (1차 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의 설비투자 지원금 1/2 범위 내에서 신청, 신청서 제출시 견적서 등 설비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6개월 경과 이후 (2차 지원금 산정) 증가 근로자수가 1차 지원금으로 산정한 근로자수를 미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1차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

- *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1차 지원금에 대한 보험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이해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연 0.375%)

나. (2차 지원금) 제도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 신청

- 1)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출한 설비투자비의 1/3 범위내에서
- 2) 제도도입 전후 6개월 간 월 평균 증가 근로자수(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00만원(제조업 1,000만원)씩 산정한 설비투자비 지원금에 대하여 1차 지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지원금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
- 3)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한 설비투자비 지원금이 이미 지급한 1차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1차 지원금 중 증가근로자수를 초과지급한 지원금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해보증보험을 통해 환수함

☞ **설비투자비**: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으로서 자금이 집행된 설비투자비만 지원대상(관련 지출증빙자료 제출)

* (적용사례) 사업주가 5억원의 장비를 구매계약하고 2차 지원금 산정기간 내 3억원만 지불하고 2억원을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경우, 설비투자비는 3억원이 되고 지원금은 이중 1/3의 범위인 1억원 내에서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지원

4-3. 설비투자비 용자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①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

☞ 설비투자: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의 투자비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 등 부동산 구입·개보수·신축·임차(월세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설비투자비 지원금’을 지원 받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비투자비 용자 신청가능

② 사업주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③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가.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1%, 대규모 기업 2% 이내

- ❖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④ 지원금 신청절차

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 신고 시 용자지원금 전액에 대한 용자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 제출서류: 설비투자계획서, 견적서 및 구매계약 또는 임대계약서 등 설비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용자지원신청서 및 설비투자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용자총액 범위 내에서 용자지원결정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통보

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용자지원결정금액을 대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지원

- ❖ 용자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용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4.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하고,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1/4 이상 보전한 경우
-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 당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 ☞ 제출서류: 노사간 임금보전에 관한 협의(합의)를 위해 노사협의회 또는 단체교섭 자료,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산정내역,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시간 단축 사실, 제도도입 전후 근로자 임금 대장 등
 - ❖ 임금감소의 대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감소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
- ③ 지원대상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을 한도(제조업은 20명)로 산정하고, 지원기간 구분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같음

구 분		지원기간
비제조업		1년
제조업	대규모 기업	1년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 ④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 신고를 한 후 매 3개월 단위로 함(신규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청)

5. 사업시행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5-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5-2. 설비투자 지원금 및 용자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 시설 또는 용자금을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종료 하여서는 안 됨

①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 또는 용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창출지원 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서식 13)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③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5-3. 설비투자비 1차 지원금이 증가근로자수보다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반환토록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함

5-2. 지원금 등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 ②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③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④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⑤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사업장: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 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된 근로자 개인별 실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 자료) 각 1부
- ⑥ 설비투자 견적서, 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등 증명서류 각 1부.(설비투자비 지원 및 용자 지원에 한함)
- ⑦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설비투자비 완납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자료 1부.(설비투자비 지원에 한함)
- ⑧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제도도입 전후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및 각 근로자별 임금감소에 따른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 등 제출(임금보전지원에 한함)

II.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

1. 사업개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대상시설을 구입·임차·신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용자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91249)

* 지원제외 대상업종 판단시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3. 지원요건

3-1.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대상 시설

- ① 기숙사
- ②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③ 구내식당
- ④ 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 ⑤ 화장실
- ⑥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 ⑦ 사내 교육시설
- ⑧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고용환경개선시설
 -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2. 승인시 우선 고려 기업

- ① 일자리함께하기,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 ②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소재 기업

3-3.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건축물 설계, 견적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등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3개월 이내에 사전 준비는 가능

3-4.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 대상 및 요건

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구입·임차·신축·개보수하여 기숙사로 활용하거나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여 근로자 통근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주택 및 통근차량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나. 사내 교육시설, 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의 구입·임차·신축·개보수

- 다.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숙사로 사용할 주택의 위치, 규모, 매매가격, 전세가격, 신축관련 견적서 또는 기타 고용환경개선시설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5.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 신청절차

- 가.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서, 견적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증빙자료 및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 신청서 제출
 - 나.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용자지원 범위 내에서 '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결정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주에게 통보
 - 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용자지원 결정 금액에 대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보
- 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연장승인 받은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주택 구입·임차·신축 등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서식 7)를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지원내용 및 한도

- ①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은 사업주 투자금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용자지원(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시 최대 50억원 한도)
- ②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가. 대출금리: 연 1~2%(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5. 사업시행 관련사항

5-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5-2.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용자금을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종료하여서는 안됨

- ①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 또는 용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창출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서식 14)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③ 지방관서장은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 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용자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함(사업주에게 관련사실 통지)

5-3. 지도점검

- 지방관서장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6.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에 따른 특례

- 6-1.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사업은 다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 6-2.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 참여한 사업주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되, 공동 참여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업주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산업단지 소재 협회 등 사업주단체가 입주기업과 공동참여 할 수 있고, 대표사업주로 선정 가능
 - ① 사업계획서는 대표사업주 명의로 제출하되, 공동참여 사업주가 부기되어야 하며, 시설 공동투자·공동사용, 지원금 배분 및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책임(구상권 등)에 대한 공동참여 사업주 간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② 대표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며, 대표사업주가 협약서에 의해 공동 참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분배함
- 6-3. 공동참여의 경우 시설비 용자지원은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참여사업주 각각 투자금액의 2/3 범위 내에서 사업주별 2억 5천만원 한도 지원
- 6-4.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지원 이자에 대해 제재조치가 부과되며 (대표사업주는 책임있는 사업주에게 협약에 의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고용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용자지원결정 취소' 요청을 해야함.

- 6-5.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라도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 ④ 시설 사용승인 서류 및 대금 지급 관계 서류 등 각 1부
- ⑤ 부동산등기부 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III.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1. 사업개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성장유망업종

2-1.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세부 지원대상 '부록 1' 참조)에 해당하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 피보험자수 산정: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⑯ 녹색금융 ⑰ MICE·융합관광

- 5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에 해당하는 창업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분 야	지원대상 인력(직종)
①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②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
③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④ 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⑤ 관 광·콘텐 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여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차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2-2. 지원요건

-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2-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각 180만원(제조업의 경우 270만원)을 지급함

- 5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분야의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고용하는 경우 2년간 8차로 구분하여 각각 180만원(제조업의 경우 270만원)을 지급함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3. 국내복귀기업

3-1.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3-2.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근로자 고용기간) 된 이후 매월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시행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시행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가 1명이상 초

과하여야 함

❖ (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 '14. 3. 15.일인 경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6월	7월	8월	9월	이후 매 3개월
사업시행 전 월 평균 근로자수			계획서 제출	3.15 승인통보서 받음	고용 준비기간	사업시행 후 월 평균 근로자수 (1차 지원금)			(2~4차 지원금)

3-3. 지원수준 및 한도

- (증가근로자수 산정)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함
- (지원수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제조업	1년	27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지원대상 한도는 매 3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4. 지역특화산업

4-1. 지원대상

-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지역적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또는 업종에 해당하는 필요 인력(4-2.

지원범위의 직종)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해당 직종 관련 여부는 근로계약서, 기업의 업무분장, 채용공고, 채용관련 자료 등으로 판단하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해당 직종의 훈련을 이수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산업(직종)을 추가 지정 요청시 본부 보고(검토후 본부 협의)

4-2.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2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2년간 8차로 구분하여 각각 180만원(제조업의 경우 270만원)을 지급
 - 2015.1.1.~2015.12.31.까지 고용한 기업에 한해 지원(필요시 연장 검토)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4-3. 2015년 지역특화산업

□ 경기도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예시)
섬유패션산업 (양주·포천)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 연구개발담당자 (디자이너 포함) - 유통 및 마케팅 인력

□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예시)
금속가공산업 (대덕·유성구)	243. 강주물 주조업 259.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및 금속파스터 및 나사제품 제조업 29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및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시제품엔지니어

□ 대구광역시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예시)
안경산업 (북구 3공단)	273. 안경, 광학기기 제조	- 산업·디자이너 - 기술인력(3D설계, CNC 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및 기획 인력

□ 전라남도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생물산업 (나주·목포)	107. 기타식품제조업	- 식품가공기술직(품질 관리) 및 연구개발직

5. 사업시행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5-1.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5-2.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의 성장유망업종(구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2년~2014년 기간 중 지원받은 대상인원 수의 합이 이 지침(2015년)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본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면(2011년 이전 지원) 새로이 지원한도를 기산하여 지원함

5-3. 지원금 등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 ②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 기업 선정확인서 1부.(국내복귀기업에 한함)



IV. 전문인력채용 지원

1. 사업개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91249)

2-2.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2-3.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지원요건

3-1.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① 경력요건

-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② 자격요건

-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안전·보건관리자’라 함)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이 지침 시행전부터 위탁한 경우에 한정함)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라.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③ 학력요건

가.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나.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다.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3-2. 전문인력의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취득일자, 법령에 따른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

3-2.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3-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함

- ①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②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③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④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4. 지원내용 및 한도

- 4-1. (지원수준)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을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각 270만원을 지급
 - 3-1. ②의 다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
- 4-2.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5. 사업시행 관련사항

- 5-1.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 5-2.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2년~2014년 기간 중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의 합이 이 지침(2015년)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본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면(2011년 이전 지원) 새로이 지원한도를 기산하여 지원함
- 5-3.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전문인

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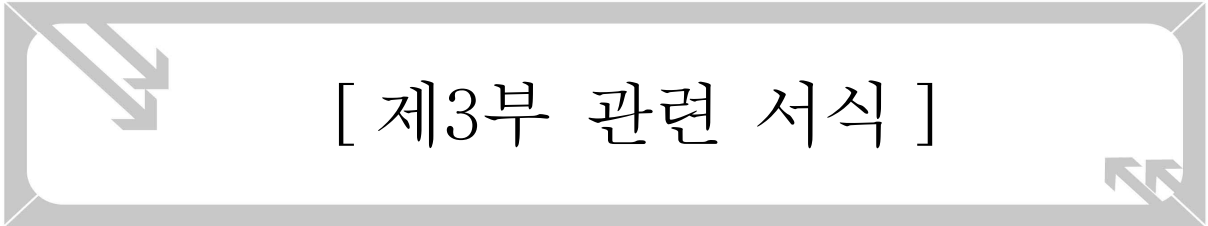
- 5-4. 전문인력의 직무내용이 사업의 내부적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업무특성상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다만,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을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 전문인력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건축설계·감리,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업장 출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 ②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
- ④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



[서식 1]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고 용 보 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업 종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 대 폰 번 호	
	전 체 근 로 자 수		피 보 험 자 수	
고용 창출 사업 참여 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함께하기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개편 <input type="checkbox"/> 실근로시간 단축제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순환제			
	<input type="checkbox"/> 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구내식당 <input type="checkbox"/> 목욕시설 <input type="checkbox"/> 사내 교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체력단련시설 <input type="checkbox"/> 통근차량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성장유망산업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 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특화산업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경영·인사분야 <input type="checkbox"/> 제품·개발 분야 <input type="checkbox"/> 기술·기능 등 기타			
지원 신청 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일자리함께하기 한함)	명 원
	설비투자비 또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한함)			원
	투자비 지원금 신청금액	원	투자비 용자금 신청금액	원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4. 설비투자비 또는 고용환경개선사업 견적서 1부



[서식 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 (예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시간제일자리 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 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 사업체 장기 비전

3. 고용창출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세부 성과목표
- 사업 전후 구조 변화
- 사업의 장기적 비전

4. 사업 세부내용

- (예시)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구체적 도입방안, 근로자 증가규모, 컨설팅서비스 이용 계획 등

5. 고용 창출계획

- 근로자 고용 계획
-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 근로자 모집 방법
-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설비투자, 고용환경 투자계획

- 설비투자 또는 고용환경개선 필요성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 설비투자 품목 또는 고용환경 개선 대상 시설 현황 등

7.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계획(일자리함께하기 한정)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근로자 현황
- 임금감소에 대한 노사부담 및 지원 방안 등

8. 자원 마련

- 추가 소요 자원 규모
- 자원 마련방법

9. 추진 일정

- (예시) 제도도입, 근로자채용 등

10. 기타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공동참여 여부 등
(공동참여사업주간 협약서 첨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서식 3]

고용창출지원사업 검토서

(앞 쪽)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④ 업종명	(주생산품:)				
	⑥ 소재지					
고용창출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함께하기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개편 <input type="checkbox"/> 실근로시간 단축제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순환제				
	<input type="checkbox"/> 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구내식당 <input type="checkbox"/> 목욕시설 <input type="checkbox"/> 사내 교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체력단련시설 <input type="checkbox"/> 통근차량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성장유망산업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 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특화산업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경력요건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input type="checkbox"/> 학력요건				
지원신청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일자리함께하기 한함)	명 원		
	설비투자비 또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			원		
	투자비 지원금 신청금액			원		
사업개요	사업의필요성					
	고용창출계획					
	사업추진일정					
법령적합성등검토내용						

[서식 4]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사업유형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20)	업종·사업내용의 적정성	5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역량	5	
	지원의 필요성	5	
사업 내용 (40)	사업계획서 충실성	15	
	사업내용의 타당성·창의성	15	
	재원마련의 적절성	5	
	추진일정의 적절성	5	
고용 창출 (40)	근로자 증가 비율의 규모	15	
	근로자 채용내용의 적절성	15	
	근로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5	
	기타 고용창출계획의 적절성	5	
가점(+10)			
총 점			
심사평			

평가위원 :

(인)

[서식 6]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앞 쪽)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사업계획서 신청일		사업계획서 승인일	
세부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역·성장업종 근로자 고용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 채용지원		
승인내용	<input type="checkbox"/>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명
	<input type="checkbox"/> 설비투자비 지원		원
	<input type="checkbox"/> 설비투자비 용자지원		원
	<input type="checkbox"/>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지원		명
	<input type="checkbox"/> 고용환경개선 투자비 용자지원		원
유의사항	※ 뒷면 참조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 뒷면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뒤 쪽)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창출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노사합의(협약) 지연, 구인의 어려움, 인허가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3개월 이내 연장) •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 근로자 인건비 지원 3개월은 매 3개월 마다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지원함 • 고용환경개선 시설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해서는 안되며, 용도 이외의 사용 또는 매각·임대·재임대 및 영리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변경요청은 1회에 한함 • 사업계획 변경시 최초 계획서상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 보다 30%를 초과하여 증감할 수 없음(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및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제외).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30%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상 시설 투자금액,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에 따른 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55세이상 고령자등 일부는 예외로 함) • 비상근축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최종 이직(고용전 1년 이내 이직 포함) 당시 사업주 및 기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고용(완료)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한함)

※ 세부사항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서식 9]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 신청서 (회차)

(앞 쪽)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대 표 자	
	③ 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④ 업 종 명	(주생산품:)		
	⑤ 소 재 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⑧ 세 부 사 업 종 류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개편 <input type="checkbox"/> 실근로시간 단축제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순환제		
	⑨ 제 도 도 입 일			
	⑩ 도 입 전 근 로 자 수	3개월 평균 명		
고 용 창 출 현 황	⑪ 도 입 후 근 로 자 수	3개월 평균 명		
	⑫ 증 가 근 로 자 수 (⑪ - ⑩)	명	⑬ 지원한도 근로자수 (승인인원)	명
	⑭ 지원근로자수 (⑫와 ⑬ 중 적은 인원)		명	
설 비 투 자 현 황	투 자 내 용			
	투 자 비 용			
임 금 감 소 현 황	임 금 감 소 근 로 자 현 황			
	임 금 감 소 에 대 한 보 전 현 황			
신 청 내 용	⑮ 신 청 기 간			
	⑯ 인 건 비 신 청 액	원		
	⑰ 설 비 투 자 비 신 청 액	원		
	⑱ 설 비 투 자 비 용 자 신 청 액	원		
	⑲ 임 금 감 소 근 로 자 임 금 보 전 신 청 액	원		
신 청 내 용	⑮ 신 청 기 간	원		
	⑯ 신 청 액			
	⑰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뒤 쪽)

□ 제도도입 이후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자	월 임금총액	업무부서	근로계약기간
박서방 최○○					<input type="checkbox"/> 기간의 정함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 설비투자비 지원 및 용자 지원금 산정내역(별지 작성 가능)

구분	품명	수량	투자에상 (견적)가격	구매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액	지급일자
계	투자계획액		원	투자금지출총액		원
설비투자 현황	CNC선반					
	컴퓨터					
설비투자 지원금 신청	<input type="checkbox"/> 1차 지원금	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원
	<input type="checkbox"/> 2차 지원금	6개월간 월평균 증가근로자		명		원
설비투자용자 지원금신청						원

□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금 산정내역(별지 작성 가능)

구분	주 또는 월간 근로시간		단축된 근로 시간	월 임금				임금보전 지원금 C*1/2
	제도 도입전	제도 도입후		제도 도입전 (A)	감소된 임금 (B)	사업주 보전임금 (C)	근로자 임금 (A-B)+C	
김서방 이○○								

※ 구비서류

1.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 협의회 회의록 등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규고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대상,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5.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사업장: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전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된 근로자 개인별 실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 자료) 각 1부
6. 설비투자 품목, 구매자금 납입증명자료 등 설비투자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뒤 쪽)

□ 제도도입 이후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 명	생년월일	고용일자	월 임금총액	업무부서	근로계약기간
박서방					<input type="checkbox"/> 기간의 정함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최○○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서 근태관리부 사본 1부
2.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1부.

[서식 13]

지역·성장산업 성장유망업종
 고용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회차)
 (앞 쪽)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업종명	(주생산물:)		
	⑤ 소재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⑥ 창업일				년 월 일
⑦ 신청지원대상자수	명 (<input type="checkbox"/> 만50세이상 전문인력 포함여부)			
⑧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 지원금신청액	원			
⑩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




(뒤 쪽)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대상자 구분	신청 기간	임금 총액	신청 금액	지원제외 대상여부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계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합병·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대상자 구분 : 전문인력의 경우 경력요건, 학력요건, 자격요건
3.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지원제외 대상여부 :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자 여부 등

A horizontal rectangular box with a grey border and rounded corners. In the top-left corner, there is a grey arrow pointing diagonally down and to the right. In the top-right corner, there is a grey arrow pointing diagonally up and to the right. The text "[제4부 부 록]" is centered within the box.

[제4부 부 록]

I. '성장유망업종'의 지원대상

- ◆ ①신성장동력 산업 '개념'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②표준 산업분류표에 속하고 ③대표품목 또는 HS코드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 HS Code(품목분류):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품목분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 ◆ 인증제도, 지정기준 등 법정제도 등 '기타사항'을 참조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역량 가능성 등 종합하여 지원대상 기업 선정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 개념: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전지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
- 대표품목: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41.40.9010(광전도 셀), 8541.40.9020(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
- 기타사항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 기업



-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1-2. 연료전지

- 개념 : 연료 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미래 발전시스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대표품목: 건물용PEMFC, 분산발전용MCFC, 건물용/분산발전용SOFC, IGFC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620(축전지 침적물), 2824(이산화연, PbO2), 2825(수산화니켈, 산화제이니켈), 78(연- 안티모니 합금), 8506(일차전지), 8507(축전지),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 기타사항: ‘태양전지’ 참조

1-3. 해양바이오

- 개념 :해조류, 해양미세조류 등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BtL(Biomass to Liquid)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804.10.0000(수소),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13.0000(부탄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2942.00(기타 유기화합물), 8479(발효기, 압착기), 8419(증류기), 8421(여과기)
- 기타사항: ‘태양전지’ 참조

1-4. 해양에너지

- 개념 : 해양의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전기.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및 설치구조물을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C3111(선박 건조업), D3530(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대표품목**: 조력발전(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수문, 방조제, 통선갑문), 조류발전(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지지구조물), 파력발전(파력변환 운동부유체, 유압장치, 터빈, 전력제어기, 발전기, 변압기), 해수온도차(해수 취.배수관, 냉.난방 장치, 열교환기, 온도차발전장치,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10(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3(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501(발전기와 전동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4(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37(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8907(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 **기타사항**: ‘태양전지’ 참조

1-5. 폐자원에너지

- **개념** : 가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21(산업용 가스제조업), C33999(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E3701(하수 및 폐수처리업), E3702(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210(지정의 폐기물 처리업), E38230(건설폐기물처리업), F41224(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M72122(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표품목**: 고분자폐자원에서부터 석유대체연료 생산, 가연성폐자원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 매체(energy carrier) 생산, 유기성폐자원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생산,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기타사항**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과 관련된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매립가스 자원화, 소각여열 활용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6 신재생에너지-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념 : 비식량 섬유질계 바이오에너지작물, 유지작물, 농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 및 가축분뇨로부터 자원화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9(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대표품목: 농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기타 중간산물, 고효율 당화효소, 가축분뇨 유래 바이오가스, 고품연료,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바이오연료 생산공정 플랜트, 고효율 발효공정 플랜트, 가축분뇨 연료 생산용 플랜트,

품목분류(HS코드 기준): 15류 (동식물성유지), 1518(동식물성유지-비식용), 2905(알코올), 8479(발효기), 8421(여과기), 8404.10(보일러용 부속기기), 8501(전동기와 발전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기타사항

- 농산업 친환경 바이오매스 작물(유채, 갈대 등)을 생산하는 영농단체 또는 기업
- 바이오알코올, 바이오디젤 생산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가축분뇨 및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장치제조, 시스템 설계·설치·유지관련 기업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7.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개념 : 폐목재, 톱밥, 수피, 입목 등 임산물을 톱밥으로 분쇄 및 압축하여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A02040(임업 관련 서비스업), C16299(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C25121(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대표품목: 목재폐기물·톱밥 등 산림부산물을 분쇄, 건조, 열성형과정을 거쳐 목재펠릿으로 제조하여 농산촌의 친환경에너지 대체연료로 보급하고, 동 펠릿을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보일러 등 제조시설

품목분류(HS코드 기준): 4401.30.0000(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403.10(보일러)

기타사항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산림바이오매스(펠릿) 친환경 연료화를 위한 보일러 등 연소기 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기업
 - * 임지로부터 바이오매스 생산 및 공급 회사에 대상 기업, 목재펠릿등 고품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 설비 제조 기업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8. 청정석탄에너지

- 개념 : 저급탄 원료의 무공해 가스화 기술로 생산된 합성가스를 CO2 저감 공정을 통해 청정 액화연료(경유 등), 청정가스, 메탄올, Naphtha 등 다양한 화학연료로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대표품목: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합성가스 활용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702(갈탄),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8414(가압, 가열 기능의 반응기)
- 기타사항: ‘태양전지’ 참조

1-9. 대용량 전력저장 장치(ESS)

- 개념 : 리튬이차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소형 이차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에너지, 압축공기 등으로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

2. 탄소저감에너지

2-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개념 : 기후변화협약 대비 지구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과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자원화를 포함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B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B080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C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413(철강관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7(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



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제조업), D352(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M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M72923 (지질조사 및탐사업)

- 대표품목:** 연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 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수송선, CO2 저장 플랜트,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04.10.4000(가스회수기), 3907.40.0000(폴리카보네이트), 8421.39.9010(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청정기)
- 기타사항:** ‘태양전지’ 참조

2-2. 원전 플랜트

- 개념 :** 상용원전의 일부 미자립 기술 국산화 및 독자적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용량 수출노형 개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5(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D35111(원자력 발전업)
- 대표품목:** 개량형 OPR1000/APR1400, 신형원전(APR+), 스마트 원자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기타사항:** ‘태양전지’ 참조

2-3. 셰일가스

- 개념 :** 비전통가스는 발견되는 지층에 따라 분류되는데, 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3. 고도물처리

3-1.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 개념:** 막여과(Membrane Filtration)란 막(Membrane)을 여재로 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9175(액체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

급업)

- **대표품목:**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가압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침지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기타사항**
 - 분리막 제조,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설계 및 설치 관련 기업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환경부)
 -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3-2.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 **개념:**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중 유해성 물질의 용출(溶出)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2211(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 C2413(철강관제조업), C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7214(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 **대표품목:** 펌프류, 밸브류, 파이프(철계열 및 비철계열)류, 유량계류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3917(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3917.20(경질의 관·파이프 및 호스), 3917.31(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과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7303.00(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411(동제의 관), 8481(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9026(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3-3.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 개념: 하수, 폐수를 필요 수질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기술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A01411(농업용수 공급),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급업), D3602(산업용수 공급업), E3701(하수 및 폐수 처리업)
- 대표품목: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MBR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기타사항
 -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3-4. 먹는샘물

- 개념: 먹는샘물 산업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물 산업
 - *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201.10.0000(광수와 탄산수)
- 대표품목: 먹는샘물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11202(생수생산업)
- 기타사항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 생산제품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

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 먹는샘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5. 해양심층수

- 개념:** 청정 해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 및 탈염 등의 과정을 거쳐 먹는물, 음료, 주류, 식품, 농수산물, 그리고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11202(생수 생산업), C111(알콜음료 제조업), C10(식료품 제조업), C2043(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D35119(기타 발전업), D353(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대표품목:** 먹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소금, 두부, 김치, 제과 등), 해양심층수로 제배된 농수산물,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한 화장품, 기능성음료, 주류, 해수냉난방시스템, 온도차발전시스템
- 고려사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인가 등을 갖춘 기업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서 언급된 해양심층수 이용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4. LED응용

- 개념:**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TR, 유사 반도체 소자), C26219(기타 평판디스플레이), C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실장기판 제조업), C26322(컴퓨터 모니터), C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C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Eco LED(고효율 RGB LED,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LED 스마트 모듈(자동차/선박,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모듈/시스템), LED 감성/ 웰빙 조명(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 LED 도로/도시조명기기)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41.40.1000(칩, 다이오드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8541.40.2090(기타 (발광다이오드 중 레이저소자 제외)), 8531.80(기타의 기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가 결합된 표시반)), 8543.90.9010(전자변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5. 그린수송시스템

5-1. 그린카

- 개념:**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C282(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C29172(공기조화장치 제조업), C29174(기체 여과기 제조업),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0320(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C30391(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C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C30399(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C32011(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C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702(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기타사항**
 - 자동차(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ISO/TS 16949, ISO 14001, Single PPM 인증업체 등 품질/환경 인증기업

5-2. 선박.해양시스템

- 개념:**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선박.해양 시스템과 해양레저선박/장비를 비롯한 유망 조선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미래형 친환경 선박, Extreme Ocean Plant, 레저보트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901.10.0000(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의 페리보트), 8901.20.0000 (탱커), 8901.30.0000(냉동선), 8901.90(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8905.10.0000(준설선), 8905.20(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90(기타(조명선, 발전선, 시추선, 부선거 등)),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레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기타사항

- 조선해양(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5-3. 첨단철도

- 개념:** 첨단철도차량산업(Electric & Machinery)이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도 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을 포괄한 개념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31201,31202(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별 제조업)
- 대표품목:** 차세대 고속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601(철도용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 8602(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8603(자주식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8605(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등),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8(철도 또는 선로용 장치물 등)
- 기타사항
- 첨단철도(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6. 첨단그린도시

6-1. U-City S/W

- 개념:** U-City S/W 산업은 첨단그린도시의 관리운영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도시특성 및 시장특성에 따른 개별 서비스시스템S/W로 구분함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대표품목:** U-City통합플랫폼S/W, U-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S/W, U-도시교통서비스시스템S/W, U-도시안전(방법,방재)서비스시스템S/W, U-도시물순환관리시스템S/W, U-도시탄소 에너지관리시스템S/W, U-도시환경관리시스템S/W, U-도시물류시스템S/W, U-도시행정 지원(원격근무포함)시스템S/W, U-City통합미들웨어, U-City건설공정관리S/W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 **고려사항**

-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된 기업

6-2. U-City IT H/W

- **개념**: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각종 IT장비 및 부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 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6221(인쇄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 **대표품목**: U-City통합단말기, 미생물연료전지기반 BOD센서, U-City 코어게이트웨이, U-City 무선 AP, U-City 센서네트워크 AP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PDA), 8517(중계기, 기지국),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23.59.3000(프록시미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 (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 **기타사항**

-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 기업
- 통합운영플랫폼 및 U-City단말과의 정보연동을 위한 상호연동기준 마련 및 인증

6-3. U-City IT 융합 H/W

- **개념**: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지능형 건축자재, 지능형 토목자재(모듈)

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331(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C2399(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지능형통풍방음벽, Water Curtain 방음벽, 지능형 벽체 모듈, 지능형 가로 바닥 모듈 등, 지능형 가로등, 지능형신호등, 미디어폴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6808(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시멘트제품,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 7308(철강제의 구조물), 7610(알루미늄제의 구조물),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 **기타사항**: 'U-City IT H/W' 참조

6-4.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개념**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효율성·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신개념 교통체계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C28903(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J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대표품목**: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및 교통정보 제공단말기, 버스정보 시스템, Hi-Pass 등 전자 요금지불 시스템 및 단말기, Smart-Highway 시스템 및 단말기,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및 단말기, 차세대 위성항행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71(PDA),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8525(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30(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8526(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8608(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부분품), 9006(사진기, 사진용 설파기구), 9013(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 9029(속도계와 회전속도계), 9033(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 **기타사항**
 - ITS 표준인증, 품질인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 교통신기술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103조)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5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6호, 환경부고시 제2006-1호)

6-5 첨단그린도시-GIS

- **개념:**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 **대표품목:**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 시스템,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8122(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G46510(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10(유선통신업), J61220(무선통신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M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2(도시계획 및 조정설계 서비스업), M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M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21(측량업), M72923(지질조사 및 탐사업), M73909(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72924(지도제작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4905(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6(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9014(방향탐지용 컴퍼스과 기타의 항행용 기기), 9015(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 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기타사항**
 - 지리공간정보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응용서비스를 컴퓨터와 기술인력이 결합하여 시장에서 지리공간정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GIS와 관련 기업
 - 정부 공공분야 GIS 확산·시범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 GIS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GIS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기업, GIS 관련 정부/단체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

6-6. 첨단그린도시-그린홈

- **개념:**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절감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저에너지·친환경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산업
- **대표품목:** 외부환경 조절 시스템, 고효율 단열 시스템, 친환경 건축 재료, 고효율 설비 시스템, 건물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5111(창 및 관련제품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 C28112(변압기제조업), C29133(탭.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 C29176(열교환기제조업), C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C284(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 C2851(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C264(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7308.30.0000(문.창문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7419.91.0000(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 8302.41.10(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413.70.90.10(터빈펌프), 8413.70.9020(블류트펌프), 8413.91.4000(원심펌프의 것), 8413.70.9090(펌프기타), 8414.80.9210(펌프사용동력이 74.6kW미만인 것), 8481.80.1010(전기작동식인 것), 8481.80.1030(기타자동제어식의 것), 8481.8020(탭.코크와 트랩), 9025.90.11(온도센서), 8501.10.20(교류전동기), 8501.53.10(전동기출력이 375kW이하인 것), 8503.00.10(전동기의 것), 8503.00.20(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8501.53.10(발전기출력이 375kW이하인 것), 8501.53.20(발전기출력이 375 kW초과 1500kW이하인 것), 8504.21.9020(변압기용량이100kVA초과 650kVA이하인 것), 8504.22.9010(변압기용량이 650kVA초과 1000kVA이하인 것), 8512.20.10(조명용기구), 9405.60.30(형광램프의 것), 7011.10.0000(전등용의 것), 8504.40.9091(전기통신용기기의 것)

II 첨단융합 산업

7. 방송통신 융합산업

7-1.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 **개념:** 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포괄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10(유선통신 장비 제조업), J61210(유선 통신업), J61291(통신 재판매업), J61229(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F42321(일반 통신공사업), F42322(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대표품목:** 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융합 제어 플랫폼, 그린 저전력 지능형 액세스 시스템, 그린 광대역 초고속 전송 시스템, 융합 정보보호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 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 차세대 네트워크와 연계된 융.복합 기술 보유 업체
 - 차세대 네트워크(BcN, HN) 핵심기술 보유업체
 - Giga인터넷 핵심기술 보유업체
 - 저전력 네트워크 기술 및 정보보안 기술 개발 업체
 - 방송통신 융합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 보유 업체

7-2. 차세대 무선통신

- **개념:**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22(이동전화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 무기 제조업), C26521(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C26529(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820(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1220(무선통신업), J61291(통신 재판매업), J6122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C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
- **대표품목:** 3GPP LTE시스템, WiBro Evolution시스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융복합 무선 통신 단말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30.0000(휴대용 자동자료 처리기계 ; PDA), 8529(부분품),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

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참조

7-3. 방송통신미디어

- 개념: DTV, DMB, IPTV, 실감미디어 등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장비 (3D입체영상 및 음향, 초고화질 등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차세대 방송 및 유무선/모바일 휴대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IPTV 서비스 등을 포함)
- 대표품목: 실감DTV방송(3DTV, UHD TV, 차세대DMB, 실감DTV 콘텐츠 및 방송장비), 차세대 IPTV(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21(방송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0(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제조업), J60110(라디오 방송업), J60210(지상파방송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J59114(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기타사항: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참조

8. IT융합시스템

8-1. IT융합

- 개념: 주력산업에 IT를 융합.접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F411(건물 건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Q861(병원),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대표품목



- 지능형 그린자동차: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동화 기술, IT융합 그린 주행 시스템 기술, IT융합 차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기술, 차량 네트워킹 플랫폼, 차량 협력 주행 시스템, 자동 발렛 파킹
- DIGITAL 선박: 선박내 통신인프라(SAN), 이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항해정보 시스템(INIS)
- 웰페어 융합 플랫폼: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헬스케어용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홈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기계류, 로봇포함), 85(전자기기류), 86(선박류), 87(자동차류), 88(항공기류), 89(선박류), 90(측정장비, 의료기기류)

8-2. RFID/USN

- 개념: RFID와 USN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 유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RFID/USN 기기, 서비스 및 응용에 관련된 가치사슬 상의 모든 player를 포함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제조업), C26221(인쇄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9(기타 주 변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999(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대표품목: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23.59.3000(프록시미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8-3. 차세대 반도체

- 개념: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전장 시스템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소자로 시스템의 고성능·고기능화, 경박단소 및 저전력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1(반도체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정보통신반도체,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저전력 센서 반도체, 차세대메모리반도체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8456·8479·8424(반도체 제조장비 등)

8-4. 차세대 디스플레이

- **개념**: 기기의 정보를 사용자(End user)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화면표시 장치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21(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OLED 조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73.10(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522.90(기타),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9(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543(기타의 전기기기), 9001(광섬유와 광섬유다발), 9013.80(기타의 기기), 9013.90(부분품과 부속품), 9017.90(부분품과 부속품), 3701(평면플레이트(플라즈마용 등), 7005(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유리 등), 7006(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로서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9. 로봇 응용

- **개념**: 로봇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 및 타 분야의 로봇화로 파생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6219(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



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329(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C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3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대표품목

- 라이프케어 로봇: 생활도우미로봇, 탑승형로봇, 근력증강로봇, 인지바이오로봇
-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팩토리로봇, 나노-바이오 생산로봇, 차세대 에너지 /정보소자 제조 로봇
- 지속가능 사회안전로봇시스템: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실감형 Sportainment 로봇, 교사도우미 로봇
- 고부가 의료 서비스 로봇: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 무절개 수술 로봇 시스템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28(기능별 로봇), 8479.50(산업용 로봇), 8486(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7류(무인자동차), 88류(무인항공기)

기타사항

-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 지경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시장검증 및 시범서비스사업 참여기업

10. 신소재 . 나노융합

1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개념: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차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소재
- 대표품목: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연속제조 마그네슘 중간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초경량 마그네슘 모듈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1류(기타의비금속), 82류(비금속제공구,스푼·포크), 83류(각종비금속제품)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39(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2(1차 비철금속 제조업), C243(금속 주조업), C251(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C259(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3(자동차 부품 제조업)
- **기타사항**
 -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 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 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10-2. Ionic Liquid(IL) 소재

- **개념**: Ionic Liquid 소재는 고온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녀 그린제품 및 그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융합소재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대표품목**: 전해질/나노융합 소재, 바이오매스 전환소재, 그린공정 소재, 표면마찰저감 소재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물)
- **기타사항**: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3. 나노탄소 융합소재

- **개념**: 나노탄소 융합소재는 나노기술 개발 경쟁에 불을 붙인 대표적 핵심 전략 나노소재로 에너지, 환경, 전자·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한 소재 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대표품목:** 그래핀 소재, 초다공질 나노기공 탄소분, 탄소 (흑연) 나노 섬유, 나노탄소 융합 복합소재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물)
- 기타사항:**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4. 기능성 나노 필름

- 개념:** 기능성 나노필름은 기존 필름에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진 필름으로 Flexible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활용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302(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 제조업), C20431(계면활성제제조업), C20491(사진용 화학제품, 감광재료제조업), C205(화학섬유 제조업), C262(전자부품 제조업)
- 대표품목:** 전도성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열응용 나노필름, 에너지 변환 나노필름, 고강성 /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28-33(각종 화학생산물), 85류(전기기기.TV.VTR)
- 기타사항:**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5.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개념:** 나노융합 바이오머신은 나노구조체 또는 나노부품으로 조립된 수십 μm 크기의 시스템 으로 초소형 감지기, 구동기 등에 적용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72(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제외),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대표품목:**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30류(의료용품), 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기타사항:**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1.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11-1. 바이오 의약품

- 개념: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1101(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C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대표품목: 유전자 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3003(의약품,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3004(의약품, 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 기타사항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 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 및 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11-2.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 개념: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대표품목: 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제, 단백질 치료제 생산형질전환 동물, 단백질 치료제, 이종장기 생산용 미니돼지, 이종 장기제품(췌도, 신장, 간 등)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1101(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C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3003(의약품), 3004(의약품),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붙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기타사항: '바이오 의약품'참조

11-3.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 개념: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물리적 전환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제품
- 대표품목: 바이오유래 플랫폼 화학제품, 바이오 섬유/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학소재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2222(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4.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 개념: BI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대표품목: 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 진단 시스템, 소형/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3006(의료용품),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7(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5.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 개념: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영상화 하는 조기진단/ 치료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
- 대표품목: 모노크로메틱 x-선 기기,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기, 3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방사선 의약품 자동합성장치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3006(의료용품),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 의용의 기기),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바이오 의약품'참조



11-6.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개념:** 노인성 질환 극복 및 고령화 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기개발 및 제품 개발
- **대표품목:**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욕창방지 bed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C27193(의료용 가구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3006(의료용품), 9019(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기타사항:** ‘바이오 의약품’참조

11-7. 화합물 제약

- **개념:** ①**신물질 신약** : 암 질환, 뇌·신경질환, 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감염성 질환, 고령화,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난치성 및 만성질환 치료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신약
 ②**혁신형 개량신약** : DDS(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신약

11-8. 천연물 제약

- **개념:** ①**천연물** :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
 ②**천연물 성분** :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
 ③**천연물신약** :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④천연물과학 :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12. 고부가 식품산업

□ 개념: 고부가 식품이란 BT.IT.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을 일컬으며, 최근 식품안전 및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식품을 의미. 기존 전통적 식품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으로 고기능성, 친환경 안전, 특수목적(우주 식품, 레저식품 등), 천연소재(화학합성물 무첨가), 개인맞춤형식품 등이 해당됨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10(식료품 제조업, 단 사료 관련 업종은 제외), C11(음료 제조업)

□ 대표품목

- 기능성식품 : 개인맞춤형식품, 천연첨가물, 대체식품소재, 특수목적식품 등
- 친환경 안심식품 : 유기식품, 식품안전인자 검지시스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등
- 웰빙 전통식품 : 저염화 전통발효식품, 명품 천일염, 건강기능강화 전통식품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02(육과 식용설육, 단 식용에 한함), 03(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단 식용에 한함), 04(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단 식용에 한함), 07(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단 식용에 한함), 08(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곡물), 11(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단 식용에 한함), 13(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단 식용에 한함), 15(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단 식용에 한함), 16(육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당류와 설탕과자), 18(코코아와 그 조제품), 19(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501(소금, 단 식용에 한함), 2936(프로비타민과 비타민),

□ 기타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활용하는 기업



- 국내 농수산물을 소재로 개별인정형을 받은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
-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인정받은 기업
- (전통주)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류 추천면허를 받은 기업
- 식품명인, 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 *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ISO 인증, GAP 인증,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HACCP,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리적표시제
- 우수식품인증(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기업
- 식품명인 인증,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HACCP(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지리적표시제

Ⅲ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 개념**: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①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②해외에 병원건설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채용조달, 건축과 감리, 운영 등 병원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Turn Key Base로 제공하는 해외병원 신설.운영 컨설팅업 및 ③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u-Health로 구성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M71531(경영컨설팅업), N7521(여행사업), P85302(대학교), Q8610(병원), Q8620(의원), Q8690(기타 보건업)
- 대표품목**(서비스)
 -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Agency 등)의 유치 서비스, 외국인 환자 전담서비스 인력(코디네이터 등) 양성 서비스.
 - 의료기관 및 컨설팅 업체의 해외병원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서비스.
 - u-Health 서비스(원격자문, 원격판독,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재활, 질환관리, 생활습관패턴관리, 방문간호원격지원, 원격복약관리, 원격정신건강관리, 원격응급의료, 예측맞춤형의료, 출산육아관리 등).

□ 기타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체.
 - * 의료법(제27조 2항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u-Health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등
-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제도 의료법 (제27조 2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개념

- 쌍방향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및 전파방송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와 이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교수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과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업
- u-러닝 관련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 한국의 u-러닝 표준모델 세계화 실현 및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J58111(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J62022(컴퓨터 시설 관리업), J6311(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J6312(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대표품목**: LMS, KMS, ERP등 종합적인 지식관리 시스템, 디지털교과서, 전자철판, Mobile 콘텐츠 저작도구 및 활용 콘텐츠, 지능형 센서, RFID, IPTV, 전자철판, 로봇, 단말기, 지식서비스 핵심 SW(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이러닝, 시험인증 등), 공개 SW, 임베디드 SW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 「이러닝 산업 발전법」에 근거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이러닝 콘텐츠 및 이러닝 콘텐츠 운용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15. 녹색 금융

* 향후 구체화 예정

16. 콘텐츠 . 소프트웨어

16-1. 콘텐츠

- 개념**: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 대표품목**: 방송콘텐츠(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TV용/극장용 애니메이션 등), 게임(온라인/비디오 게임, 게임솔루션 등), 융합콘텐츠(가상세계, CG, 양방향콘텐츠 등)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J59111(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J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8211(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6-2. 소프트웨어

- 개념**: 소프트웨어(SW)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 혹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표품목**
 - 공개SW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SaaS, 리눅스 OS, 그린SW
 - 지능형 인터페이스 :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자동통역 등의 인터페이스
 - 임베디드SW : 군사, 항공,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융합하는 SW
 - 사회안전시스템 : 개인용 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 차세대웹 : 시맨틱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지능형 검색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17. MICE . 융합관광

17-1. MICE

- **개념:** Meetings(회의), Incentives(보상관광·행사),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 유치·개최 관련산업
- **대표품목:**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기획서비스업, 국제회의장치사업, 국제회의 공연이벤트업, 국제 회의시설업,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업, 전시시설사업, 전시주최사업, 전시장치사업, 전시용역사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H50111(외항여객운송업), H51100(정기 항공 운송업), H51200(부정기 항공 운송업), I55111(호텔업), I55133(휴양콘도 운영업), M73902(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N75211(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N75212(국내여행사업), N75290(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N75992(전시 및 행사 대행업), P90110(공연시설 운영업), P90121(연극단체), P90122(무용 및 음악단체), P90123(기타공연단체), P90131 (공연예술가), P90132(비공연예술가), P90191(공연기획업), P90192(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17-2. 생태관광

- **개념:**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 (세계생태관광협회)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I5511(관광숙박시설 운영업), N7521(여행사업), R9023(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II.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업종			주요 생산품	
사업내용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순환제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input type="checkbox"/> 실근로시간단축제			
세부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전환	전환 유형	<input type="checkbox"/> 주야 2조2교대 <input type="checkbox"/> 3조2교대 <input type="checkbox"/> 4조2교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주간 2조2교대 <input type="checkbox"/> 3조3교대 <input type="checkbox"/> 4조3교대
	* 제조업(500명이하)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유연근로대상업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노동 조합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조직률	조합원수 : 명 조직률 : %		
노사 협의회	설치 유무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구성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최근 개최일자	최근 개최회의 논의사항		

1 사업장 연혁

해당연도	설립 및 주요변동사항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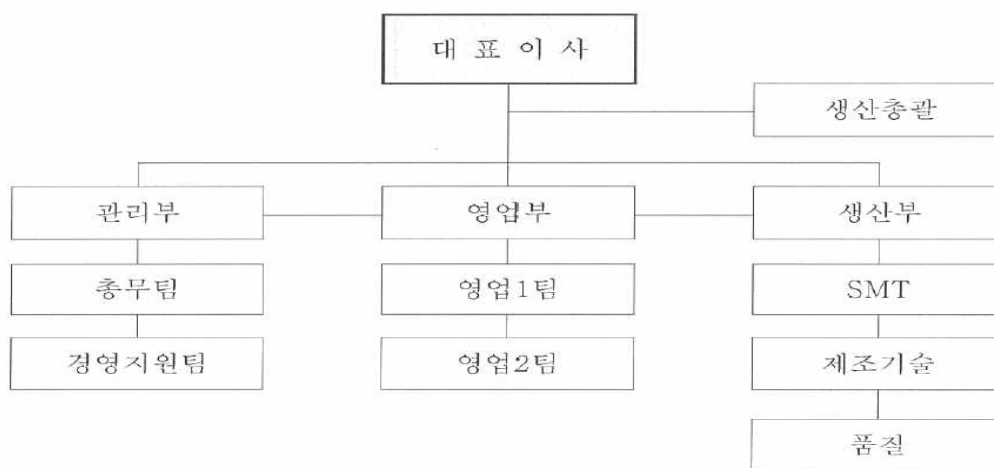
* 회사연혁 일반내용을 기반으로 사업확장, 주요 생산물 추가, 시설·설비확장, 인수·합병·분할 관련 사항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작성 바람

② 재무상태

- 최근 3년 이내 매출액 규모, 총자산 현황 기재

구 분	매출액 규모	영업이익
2011년		
2012년		
2013년		

③ 조직체계



④ 인력구성 현황

부서 (직군)	고용형태 (단위 : 인원수)								평균 연령	평균 근속연수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전체)	200	47	21				221	47		
제1공장	50	10	5				55	10	34	5
제2공장	100	20	16				116	20	32	4
관리팀	20	12					20	12	41	7
영업팀	30	5					30	5	37	2

⑤ 월 평균근로자수 현황

*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월평균 근로자수: 제도도입 대상부서의 직전 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

부서(직군)	전체 근로자수	적용제외 근로자수	월평균 근로자수
제1공장	65	5	60
제2공장	136	16	120
관리팀	32	-	32
계(전체)	233	21	212

6 인사노무관리 현황

1) 근로시간 관리체계 (중복체크 가능)

근로시간 관리형태	전자카드 <input type="checkbox"/> 지문인식 <input type="checkbox"/> 타임레코드 <input type="checkbox"/> 출퇴근기록대장
-----------	--

* 근로시간 단축 대상부서에 한해서 체크

* 원칙적으로는 전자카드·지문인식 등의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됨.

예외적으로,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수동식 타임레코드에 기록된 자료,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기입한 근태현황명부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2) 교대제 운영 현황

대상 부서·직종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제1공장 생산직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65
품질 관리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13

3) 비 교대제 운영 현황

부서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대상 인원수					
생산팀	08:30 ~ 19:30 (휴게시간 12:30 ~ 13:30)	5일	54명					
	직전 6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① 사업 개요

- 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이 추진하고자하는 주요 사업방향 제시

② 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제도 도입·개선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 증진 필요성 등에 대한 제시

③ 세부 성과 목표

- 동 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기술

④ 사업의 장기적 비전

- 동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도입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지속 가능성 여부 판단)

3. 사업 세부내용

① 사업 전후 구조 변화

② 교대제 도입·전환 계획

대상 부서·직종	도입·전환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제1공장 생산직	도입 <input type="checkbox"/> 전환 <input type="checkbox"/>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65
품질관리	도입 <input type="checkbox"/> 전환 <input type="checkbox"/>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13

* 교대제 도입·전환 부서에 한하여 기재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여부	도입 안함 <input type="checkbox"/>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	--

* 교대제 도입·전환 부서에 한하여 기재

③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1) 단축계획 개요

* 제도 도입 후 사업구조, 직무체계 등 동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내용 기술

2) 제도도입 전

해당 부서	직전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부서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	40	52	48	52	48	40	280	46.7	100

* 실근로시간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기재

3) 제도도입 후

해당 부서	단축조치 일부터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	부서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	45	38	31	24	21	22	181	03.1	113

4] 고용창출 예상인원

- * 단축예정 전체 월 초과근로시간 산정
- * 필요인력산정 : $\frac{\text{단축예정 총 근로시간}}{\text{채용예정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 * 고용창출 예상인원은 실제 채용이 가능하거나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

해당 부서	단축예정 평균초과근로시간	부서 근로자 수	단축예정 총근로시간	채용예정근로 자월평균 근로시간	필요인 력산정	고용창출 예상인원
○ ○	16.6h (=46.7h-30.1h)	100명	1660h (=16.6h×100 명)	174h	9.54명	13명

4. 임금보전방안

사업유형	임금보전 대상	보전 방안 마련 계획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도입	교대제 도입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예시) 1. 노사간 각 50% 부담 합의 2. 기업 측 100% 보전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전환	교대제 전환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예시) 1. 노사간 각 50% 부담 합의 2. 기업 측 100% 보전
<input type="checkbox"/> 실근로시간단축	단축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예시) 1. 노사 간 각 50% 부담 합의 2. 기업 측 100% 보전



5. 설비투자계획

① 설비투자 계획 및 필요성

② 설비투자 내역

품 명	수 량	투자에상 (견적)가격	설비도입 예정일일
계			
CNC선반			
컴퓨터			

③ 재원 마련 계획

구분	소요예산
직접투자	
설비투자비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추가 소요 재원 = (근로자 총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동 지원사업 지원금)

* 추가 소요 재원 마련 방법 등

④ 추진 일정

구 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제도도입			▶						
근로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 신청 사업장의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 가능함